

행정자치부 시정요구

제 목 기록관 업무 추진 부적정

기 관 명 강원도

관 계 기 관 영월군, 정선군, 철원군, 평창군

내 용

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록물을 소관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고

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기록물을 처리과에서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기록물철 단위로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고

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이관대상 기록물철을 단위과제별로 구분하여 보존상자에 넣은 후 이관목록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, 업무에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의 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기록물철 단위로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고

제35조에 따르면 기록관은 그 공공기관 및 소속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원본 및 목록의 일치 여부, 물리적 상태 확인 등의 검수절차를 거쳐야 한다.

그리고, 같은 법 제1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신설 또는 변경된 단위과제에 대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, 10월 31일 후에 발생하는 신설 또

는 변경 단위과제는 사안 발생 즉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

또한, 같은 법 제27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, 기록물 폐기의 시행은 민간 등에 위탁할 수 있으나, 이 경우 기록물의 폐기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감독하는 등 기록물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

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기록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생산부서 의견조회,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,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 하고

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면 기록관은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보존환경의 유지, 보안대책 및 재난대비 계획 수립·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, 기록물은 기록물 형태, 처리과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관의 장이 정하며, 보존중인 기록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점검과 상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

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르면 기록물을 관리하는 서고에는 서고번호와 서가번호를 표시하고 이를 등록하여 기록물의 보존위치를 식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제31조에 의하면 보존기록물을 2년에 한 번씩 정수점검을 하여야 한다.

또한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기록물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별로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

그러나, 강원도 영월군(○○○○과)은 각 처리과에서 생산한 기록물에 대하여 정리작업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, 처리과 보유기간이 경과한 이관대상 기록물에 대하여 정기적인 이관을 실시하지 않았고, 처리과별로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·운영하지 않았으며, 소관 기록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보안대책 및 재

난대비 계획을 수립·시행하지 않았고, 기록관 보존서고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 정수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보유기록물 목록도 구비하지 못하고 있으며,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평가·폐기절차를 준수하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기록관 업무 수행이 부적정한 사실이 있고

강원도 정선군(○○○○과)은 기록관리기준표의 단위과제를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의·확정없이 임의로 생성하여 사용하고 있으며, 각 처리과로부터 보유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정기적인 이관을 실시하지 못하였고,

2013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평가·폐기절차를 수행하지 않았으며, 처리과별로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·운영하지 않았고, 기록관 보존서고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 상태점검 및 정수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기록관 업무 수행이 부적정한 사실이 있으며,

강원도 철원군(○○○○과)은 기록관리기준표의 단위과제를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의·확정없이 임의로 생성하여 사용하고 있으며, 각 처리과로부터 보유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정기적인 이관을 실시하지 못하였고, 2013년부터 현재까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평가·폐기절차를 수행하지 않았으며, 처리과별로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·운영하지 않았으며, 기록관 보존서고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 상태점검 및 정수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기록관 업무 수행이 부적정한 사실이 있고,

강원도 평창군(○○○○과)은 2013년 최초 기록관리기준표의 단위과제 생성 이후 신설 또는 변경된 단위과제에 대하여 협의·확정을 실시하지 않았고, 각 처리과에서 생산한 기록물에 대하여 정리작업을 실시하지 않아 처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, 2014년 이후 처리과 보유기간이 경과한 이관대상 기록물에 대하여 정기적인 이관을 실시하지 않고, 처리과별로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·운영하지 않았으며, 기록관 보존서고

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 상태점검 및 정수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기록관 업무 수행이 부적정한 사실이 있다.

조치할 사항 영월군수, 정선군수, 철원군수, 평창군수는

- ① 앞으로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기록관 업무가 부적정하게 추진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,
- ②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기준표 운영, 기록물 이관, 보존서고 기록물 정수점검, 처리과 기록물관리 책임자 지정,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에 대한 평가·폐기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시기 바랍니다.